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68
----------	----

제출연월일 : 2006. 11. 3.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조례상 인용법령인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제1항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해당없음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중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3항」을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를 「대전광역시 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 적립조례」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주차장법시행령”을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세입) ① (생 략)</p> <p>1.~4. (생 략)</p> <p>5. 촉진법 제34조 및 <u>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3항</u>에 의한 과태료</p> <p>6.~10. (생 략)</p> <p>② (생 략)</p> <p>③ 제1항제4호의 과징금중 <u>운수사업체 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u>에서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한 금액은 적립기간 만료된 이후부터 이 회계의 수입으로 관리한다.</p>	<p>제3조(세입) ① (현행과 같음)</p> <p>1.~4. (현행과 같음)</p> <p>5. ----- 「<u>도로교통법</u>」 제160조제3항-----</p> <p>6.~10.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대전광역시 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u>」-----</p> <p>-----</p> <p>-----</p>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③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32조 내지 제34조 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III.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 예 순)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앞의 내용과 같음.

2.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이 2006. 6. 1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관련 규정을 법제처 표준안 기준에 부합되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 안 제3조제1항제5호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 함.
- 안 제1조, 안 제3조제1항제1.3.4호, 안 제3조제2항에서는 법제처 표준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띄어쓰기, 낫표 등을 정비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 함.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 「도로교통법」이 2006. 6. 1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사항은 법제처 표준안 기준에 부합되도록 관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주차장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 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우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하여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 하려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IV. 질 의 요 지 : 생 략

V.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